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이라는 단어가 단순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지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설 기술이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등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여 2021년 3월 16일 공포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중 “건설기술용역”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